

의정부지방법원 2019. 6. 18 선고 2019가단99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6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3. 6. 5. 접수 제587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강영훈

별지